일련번호	2	감사자	직급 : ○급 성명 : A (서명)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신분	상 조치	재정상 조치			
107 リニュレ	♪ · 출연기관	종류	인원	조치방법	금액(천 원)		
	한 년/ [인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임직원 공무원 행동강령」등 위반

관계기관 □□ 등 12개 투자·출연기관

내 용

서울시 각 투자·출연기관 「임직원 행동강령」 및 「복무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을 해서는 아니 되고,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 시작 3일 전까지 행동강령책임관(대표이사 등)에게 승인 요청하여야 하며, 직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출장 명령을 받아야 한다.

한편「지방공무원 인사실무 규정」에 의하면 외부강의 출강은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에 의하도록 하고 개인적인 전화나 e메일 등을 통한 외부강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각 투자・출연기관 임직원은 자체규정 등에 따라 외부강의 신고기한, 횟수제한 규정 및 복무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표1〉의 12개 투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 47명은 2023 상반기 외부강의 출강 시 신고기한 경과, 출장비 중복수령, 출장 등록 누락 등 총 58건에 대해 「임직원 행동강령」및「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

〈표1 외부강의 관련 위반현황〉

O4		위반인원	위반현황					
연 번	기관명		소계 (건수)	신고의무 위반(지연 등)	요청기관 공문미첨부	횟수 · 시간 제한위반	여비 이중수령	복무관리 위반
계		47	58	33	3	2	3	17
1		1	1	1	_	_	_	_
2		1	1	1	_	_	_	_
3	00	2	2	_	_	2	_	_
4	••	2	2	2	_	_	_	_
5	00	18	21	2	_	_	3	16
6	$\Diamond \Diamond$	1	1	_	1	_	_	_
7	**	7	10	9	_	_	_	1
8	$\triangle \triangle$	1	1	1	_	_	_	_
9	^	2	3	1	2	_	_	_
10	*	8	12	12		_	_	_
11		3	3	3		_	_	_
12	$\nabla\nabla$	1	1	1	_	_	_	_

조치할 사항

□□ 등 12개 투자·출연기관은 2023 상반기 외부강의등 실태점점 결과에 따라 향후 동일·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강의 등 관련규정에 대한 소속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신고의무, 복무관리 위반 등 동일 사안 위반이 10회 이상인 기관은 추후 동일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직원에 대해 특별교육(대면교육, 경위서 징구 등) 실시